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409

제출연월일 : 2008. 10. 27.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정이유

「교통안전법」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).

나.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다.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2008. 9. 5. ~ 9. 24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.

②기획관리실장, 교통건설국장, 소방본부장, 대전지방경찰청차장,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,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,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·충청남도지부장,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위원장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직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고,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6조(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·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된다.

④대중교통과장, 운송주차과장, 건설도로과장, 방재과장, 소방본부대응구조과장,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업무부서장,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업무부서장, 대전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업무부서장,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·충청남도지부 안전관리업무부서장,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사안전관리업무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.

⑤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□ 교통안전법

제13조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도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교통안전법 시행령

제3조(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~② (생략)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전문위원)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(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.

②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“지역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제9조 (수당 등) 국가교통안전위원회·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년 12월 5일
산업건설위원회

Ⅰ. 심 사 경 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10월 28일

3. 상 정 일 자 :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(2008. 12. 5)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교통건설국장 김의수)

1. 제안이유

「교통안전법」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).

나.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다.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)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이환구)

○ 본 조례안은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○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.

○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.

○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에 대하여 규정함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○ 본 조례안은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우리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조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
○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「교통안전법」이 2006.

12. 28일 전부 개정되어 2008. 1.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지연된 바, 앞으로는 상위법령개정 등 여건이 변화되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례제정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Ⅳ. 질의·답변요지 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 : 생 략

Ⅵ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Ⅶ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